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작은영화관 위치 및 시설(안 제2조, 안 제3조)

나. 작은영화관 관람료(안 제5조)

다. 작은영화관 운영 및 지원(안 제7조)

라. 수탁자의 의무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1. 17. ~ 2022. 2. 6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작은영화관의 관람료, 운영 및 지원사항,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